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459

발의연월일: 2024. 11. 11.

발 의 자:남인순·김남근・임미애

김 윤 · 서미화 · 이재정

김성환 • 전진숙 • 백혜련

김영배 · 민병덕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급격하게 감소하여 2023년 0.7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며, 초저출생 현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또한 초저출생 현상과 함께 2025년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 예정이며,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전국 시·군·구의 절반이 소멸위험 지역에 해당함.

이렇듯 우리나라는 저출생, 고령화, 인구감소, 인구의 불균형 분포, 가구 형태의 다양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고,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해 장기적이고 종합 적인 미래 예측성을 높여 인구구조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 성이 있음.

그러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정책 범위가 저출산과 고령

사회 대응에 한정하고 있고, 여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져있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총괄·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대체하고 포괄하여 직면한 인구구조 변화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정책의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확대하고, 인구총괄부장관에게 인구정책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 권한 및 총괄조정 권한을 부여하고자 함. 또한 저출생 대응을 비롯한 인구정책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인구특별회계'를설치하여, 인구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가와 사회의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며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이바지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5461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 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구정책기본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출생, 고령화, 인구감소, 인구의 불균형 분포, 가구 형태의 다양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인구정책의 기본 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가와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며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실현하고, 인구구조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불균형을 해소하며, 누구나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

고 인구의 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는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인구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양성평등 실현 및 세대간·지역간 갈등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 제5조(국민의 책임과 권리) ① 국민은 저출생·고령화, 인구감소, 인구의 불균형 분포, 가구 형태의 다양화 등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가정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인구정책 참여를 위하여 상호연대를 강화하여야 한다.
 - ②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인구정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국가는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인구정책 수립 · 추진체계 및 인구예산의 사전심의

- 제7조(인구정책의 총괄·조정) 인구총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인구정책을 총괄·조정한다.
- 제8조(인구정책 기본계획) ① 인구총괄부장관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예산의 전략적투자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인구정 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인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 2.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 3. 장래 인구구조 변동 예측 및 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경제·사회적 영향
 - 4.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 5.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 6. 인구정책 관련 중장기 재정투자 및 분야별 재정배분 방향
 - 7.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기본계획을 고려

하여야 한다.

- ⑤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안(이하 "시행계획안"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안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안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안에 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안의 이행상황을 기본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해의 시행계획안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매년 5월 31일까지 인구총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일·가정양립, 임신·출산·양육·돌봄, 주거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 관련 사업(이하"인구정책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예산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인구총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 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시행계획안 및 예산요구서를 조정·심사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제11조에 따른 인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다음 연도 인구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 2. 인구정책사업의 분야별 · 사업별 투자우선순위
- 3. 인구정책사업 예산안의 배분·조정 내역
- 4. 그 밖에 인구정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제 11조에 따른 인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연도 인구정책사업 예산안 편성 시 국가 재정 건전성 관리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항에 따라 통보한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구정책사업 예산안을 조정한 때에는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인구총괄부장관은 다음 연도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제4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확정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시행계획안을 확정한다.
-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구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구조 변화 및 대응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하여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⑧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 제10조(업무의 협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인구총괄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구구조 변화 및 대응 관 련 계획 및 정책,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 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1조(인구정책심의위원회) ① 인구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구총괄부장관 소속으로 인구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인구감소, 인구의 고령화 및 인구의 수도권 집중 등 중·장기 인 구구조 변화에 관한 분석
 - 2. 중·장기 인구구조 변화에 수반되는 사회구조 및 경제환경 변화 에 관한 사항
 - 3. 인구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 4.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5. 인구정책의 평가에 관한 사항
-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인구정책사업 중 유사·중복 사업의 통합·조정에 관한 사항
- 7.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8. 그 밖에 인구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인구총괄부장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2호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2. 인구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3. 기타 다양한 의견 반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⑤ 위원장은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세대와 지역별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① 위원회는 인구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 ⑧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국회보고) 인구총괄부장관은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이에 대한 평가 등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인구정책의 평가 및 조정 등

- 제13조(인구정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① 인구총괄부장관은 매년 인구정책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이하"인구정책평가"라 한다) 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인구총괄부장관은 인구정책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 기업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 기업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인구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구정책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인구정책평가의 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전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인구총괄부장관은 인구정

책의 수립·조정, 평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그 밖에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인구정책 조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위원회가 심의하는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에 대한 지원
- 2.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대한 지원
- 3. 인구정책평가에 대한 지원
- 4. 지역별 · 산업별 인구 변동에 대한 연구 및 평가
- 5.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등 생애주기별로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조사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
- ③ 인구총괄부장관은 전문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전문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 ④ 인구총괄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 수행이 부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⑤ 인구총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⑥ 전문기관의 지정 및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 제15조(인구감소 대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감소 추세 및 그 파급 효과를 예측하여 인구감소로 인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학령인구와 병역자원의 감소 등 축소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16조(청년의 생애과정 이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세대의 자립과 사회진출 등 생애과정이 순조롭게 이행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17조(포용적인 가족 정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가구 형태를 고려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8조(자녀의 출산과 양질의 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출산이 존중받고 어떤 아동도 차별받지 않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9조(결혼 출산을 위한 주거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누구나 안정적인 결혼과 출산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 안정에 관한 시책 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20조(일·가정 양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 ·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모두가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1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 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 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22조(국내 이주민의 정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외동포와 외국 인 등 국내로 이주하는 사람의 정착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23조(고령사회 대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인구의 규모 및 고령화 속도를 예측하여 사회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이 노후에도 건강하고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24조(세대 간 통합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세대 간 통합과 연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 제25조(고용과 소득보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26조(사회보장 지속가능성 제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 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27조(생활환경과 안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편리한 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설비를 갖춘 주거와 이용시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세대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노후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재

해와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28조(평생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세대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 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교육 시설의 설치·인력의 양성 및 프로그 램의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누구나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설계하기 위하여 재무, 건강, 여가, 사회 참여 등 각 분야에서 적절한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29조(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노인·장애가 있는 사람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 제30조(고령친화 환경 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수요의 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에게 필요한 용구와 용품 등의 연구 개발·생산 및 보급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31조(지역소멸 대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 상을 완화하고 지역 활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 제32조(지역 격차 해소)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정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서 지역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 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미래세대의 규모, 지역별 고령화의 속도, 경제·산업구조 및 노동환경, 주거 환경의 변화 등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33조(지역 정주기반의 확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보육·교육·의료·주거 및 교통·문화기반의 확충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과 연계를 기반으로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제34조(지방자치단체 자립 역량 강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 치단체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 연계·협력 등을 활성 화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장 인구특별회계의 설치 등

- 제35조(인구특별회계의 설치) ① 인구정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그 관리·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인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하다)를 설치하다.
 - ② 회계는 인구총괄부장관이 관리 · 운용한다.

- ③ 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2. 제37조에 따른 차입금
- 3.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 ④ 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
- 1. 인구정책사업의 추진을 위한 경비
- 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3. 회계의 관리 · 운용에 필요한 경비
- 제36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회계는 세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 제37조(차입금) ① 회계는 세출 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장기 차입을 할 수 있다.
 - ② 회계는 지출할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제38조(세출예산의 이월) 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은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39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제40조(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 제41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연구소·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필요한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2조(조사 및 연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기관을 설치하거나 연구소·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43조(민간의 참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정책에 관하여 민간 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4조(인구의 날) ①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적·경제적· 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7월 11일을 인구

- 의 날로 정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5조(국제교류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참여하고,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 구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 다.
- 제46조(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인구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감면 등 필요한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수립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은 이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할 때까지는 이 법에 따른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으로 본다.

- 제3조(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이 법에 따른 인구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 제4조(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임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 전날 만료된 것으로 본다.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아동수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0조의2(첫만남이용권 지급)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이하"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 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③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아동의 친권자 ·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급 대상·금액·방법, 이용기한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인구정책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한다.

③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인구정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인구정책기본계획"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를 "「인구정책기본법」 제9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정책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인구정책 심의위원회"로 한다.

④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인구정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인구정책 기본계획
- 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 "「인구정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인구정책 기본계획"으로 한다.

- ⑥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정부는 「인구정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인구정책 기본계획"으로 한다.
-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에 따른 인구정책심의위원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